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9. . . (제 회)	

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19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적십자사총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이 개정되고,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의 명칭을 각각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하는 내용으로 「혈액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이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,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9. 2. 28. ~ 4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협조하여야 하며, 대한적십자사총재는”을 “협조해야 하며, 대한적십자사 회장은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헌혈환부적립금의 용도)”를 “(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)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헌혈환부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)”을 “(헌혈환급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헌혈환부적립금”을 “헌혈환급적립금”으로, “대한적십자사총재는”을 “대한적십자사 회장은”으로, “운영하여야”를 “운영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대한적십자사총재는”을 “대한적십자사 회장은”으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설정하여야”를 “설정해야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”를 “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8조제5항 및 제6항”을 “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헌혈환부예치금”을 “헌혈환급예치금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제11호 중 “교부 및 환부”를 “발급 및 보상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
가. 법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제1호	150만원
나. 법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제2호	150만원
다.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3조제1항제3호	200만원
라. 법 제1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	법 제23조제1항제4호	100만원

마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제5호	150만원
---	--------------	-------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헌혈의 권장) ① (생 략)</p> <p>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·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·④ (생 략)</p>	<p>제2조(헌혈의 권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<u>협조해야 하며, 대한적십자사 회장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<u>헌혈환부적립금의 용도</u>) (생 략)</p>	<p>제8조(<u>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</u>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<u>헌혈환부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</u>) ①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<u>헌혈환부적립금(이하 “적립금”이라 한다)의 조성·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적립금을 대한적십자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<u>대한적십자사총재는</u>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「은행법」에 <u>의한</u> 은행</p>	<p>제9조(<u>헌혈환급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</u>) ①----- -- <u>헌혈환급적립금</u>----- ----- ----- <u>대한적십자사 회장</u> ----- ----- ----- <u>운영해야</u> -----.</p> <p>②<u>대한적십자사 회장은</u> -----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</p>

에 적립금 계좌를 설정하여야
한다.

제1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(생략)

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
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
무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위
탁한다.

1. (생략)
2. 법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
른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
에 관한 정보의 보고 접수 및
유지·관리에 관한 업무
3. (생략)
4.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
한 헌혈환부예치금의 수납업
무
5. (생략)

제10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보건복지부장관
(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
의 권한 등을 위임·위탁받은
자를 포함한다) 또는 혈액원은
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
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
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

----- 설정해야 --
-----.

제1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---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-----

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
-- 헌혈환부예치금-----
--
5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-----

<p>강, 성생활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11. 법 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의 <u>교부 및 환부</u> 등에 관한 사무</p> <p>12.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-----</p> <p>-- <u>발급 및 보상</u> -----</p> <p>--</p> <p>12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949